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570
----------	------

2022년 2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8월 10일 정진술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3.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2월 1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정진술 의원)

1. 제안이유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영유아 발달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1 조례안의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관련 업무 위탁 등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관련(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목적)는 동 조례에서 영유아의 발달지원 사항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정의)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정의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1)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차용하는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것임.

- 이외에 ‘영유아 발달’ 및 ‘발달 검사’의 경우 상위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관련 연구²⁾에 따르면 영유아의 발달적 위치를 평가하고, 정상 발달로부터 이탈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는 척도를 ‘영유아 발달검사’라 정의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³⁾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및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제1항⁴⁾ 및 「모자보건법」 제3조⁵⁾등에서도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

2.~3. <중략>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생략>

2) 장혜정(2019).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III에서 나타난 신경발달장애 영유아의 발달 특성. 석사학위논문.

3)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 ④ <생략>.

4)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진단·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5)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의 각종 사업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인정됨.

나.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관련(안 제 6조 ~ 안 제7조)

-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시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7조(실태조사 등)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우선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제1항6)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7)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 ③ <생략>.

7) 「건강검진기본법」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운영계획⁸⁾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1항⁹⁾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¹⁰⁾’에 따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등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¹¹⁾에서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정책의 종합적 추진 및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8)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운영계획. 건강증진과-6908호(2021.3.29.)

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2013.12.4, 2019.6.4>

1. ~ 5. <중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 9. <생략>

10)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보육사업안내. p485.

11) 「영유아보육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다.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관련(안 제8조 ~ 안 제9조)

- 안 제8조(지원사업)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에 영유아 발달검사,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건강증진과 및 자치구 보건소 등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을 통해 영유아 기초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연계¹²⁾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정안은 서울시의 정책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짐.
- 안 제9조(사무의 위탁)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¹³⁾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12) 2021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운영계획. 건강증진과-6908호(2021.3.29.)

1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중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민간부문의 전문성, 효율성을 접목할 수 있으나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역량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더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⁴⁾는 점에서 무분별한 위탁을 방지할 필요도 있을 것임.

라. 중복지원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 안 제11조)

- 안 제10조(중복지원 제한)는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동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중복지원 방지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유아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 시민의 편익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증진시키되 관련 민원 발생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협력체계 구축)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제6조¹⁵⁾에서도 건강검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된다 할 것임.

14) 신상민 (201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법학논총, 32, 81-109

15) 「건강검진기본법」 제6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동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관련 업무 위탁 등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동 제정조례안을 통해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관련 각종 사업들이 향후 일괄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 김기대, 김기덕,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송명화, 양민규,
임종국,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영유아 발달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

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자치구,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1072700000020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정진술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7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7조(실태조사)에서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8조(지원사업)제2항, 4항에서 영유아 발달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및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제9조에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제8조(지원사업)제1항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 제8조제3항 영유아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은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서울시 시민건강국 기추진 사업 2021년 예산 294,027천원(붙임 참고)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2,479,810천원으로 연평균 495,962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치료지원비 및 상담심리검사 지원 대상자 수는 2020년 기준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급인원 309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

※참고) 2020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검사비 지원현황

구 분	대상인원(명)	지원현황		
		지원인원(명)	지원률(%)	
계	1,824	309	17	
의료급여수급권자	146	16	11	
건강보험가입자	차상위	40	7	18
	일반	1,638	286	17

-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3년에 1번으로 가정
- 영유아 발달지연 및 치료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치료비 지원사업 및 상담심리검사는 영유아 발달지원 센터에서 추진하고 센터는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로 전제

- 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비는 시민건강국 제출자료 참고·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479,810천원 (연평균 495,962천원)

- 총 비용 = 실태조사비 + 치료지원비 + 상담심리검사 지원비 +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운영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제7조 (실태조사비)	30,000	-	-	30,000	-	60,000
	제8조제2항 (치료지원비)	101,970	101,970	101,970	101,970	101,970	509,850
	제8조제4항 (상담심리검사비)	27,192	27,192	27,192	27,192	27,192	135,960
	제9조 (사무의 위탁)	354,800	354,800	354,800	354,800	354,800	1,774,000
	소계(b)	513,962	483,962	483,962	513,962	483,962	2,479,810
총비용(b-a)		513,962	483,962	483,962	513,962	483,962	2,479,810

주1: 실태조사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의 실태조사비 준용

주2: 치료지원비는 보건복지부 유사사업의 발달재활서비스비 준용

주3: 상담심리검사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의 외래진료상담비 준용

주4: 사무위탁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 유사사업비 준용

○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현황 실태조사 ≙ 60,000천원

= 30,000천원 × 2회

※참고) 실태조사 단가(2021년 시민건강국 예산서 기준)

- 정신응급센터 실태조사 35,000천원

- 서울시 길거리 흡연 및 흡연부스 실태조사 22,000천원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비 ≙ 509,850천원

= 330천원 × 309명 × 5년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는 회당27,500원, 월1회로

가정하여 연330천원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는 회당27,500원, 월8회로 지급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상담·심리검사지원비 ≙ 135,960천원
= 88천원 × 309명 × 5년

- 영유아 발달 지연 대상자에 대한 상담·심리검사는 연1회로 가정

※참고) 외래진료상담비 단가

-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외래진료상담비 8,000원

- 다문화정신건강클리닉 심리검사비 80,000원

○ 사무의 위탁(영유아 발달지원센터 운영비용) ≙ 1,774,000천원
= 354,800천원 × 5년

※(가칭)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예산 편성내역(안)

(단위 : 천원)

내역	세부내역	예산
합 계		354,800
사무관리비	- 운영경비 등	15,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106,800
	35,600천원*3명	30,000
	- 관리운영비	
민간위탁사업비	- 업무용 PC 등 구입	3,000
	1,000천원*3대	
기타자본이전	- 임차보증금	200,000

자료 : 2021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참고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91@seoul.go.kr